

<b>의 안 번 호</b>	<b>1660</b>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】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9. 29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0. 6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0. 15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개정(2020. 6. 9. 공포 · 시행)에 따라 여유재원이나 세입부족 및 긴급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통합기금을 “통합계정”과 “재정안정화계정”으로 구분(안 제2조)
- 통합기금의 재원 및 용도(안 제3조 및 제4조)
-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(안 제5조)
-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기금 회계관직의 지정(안 제8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 · 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 · 예탁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· 운용)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영숙)**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
-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# 근 거 법 규

### 지방재정법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-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 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 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3. 통합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